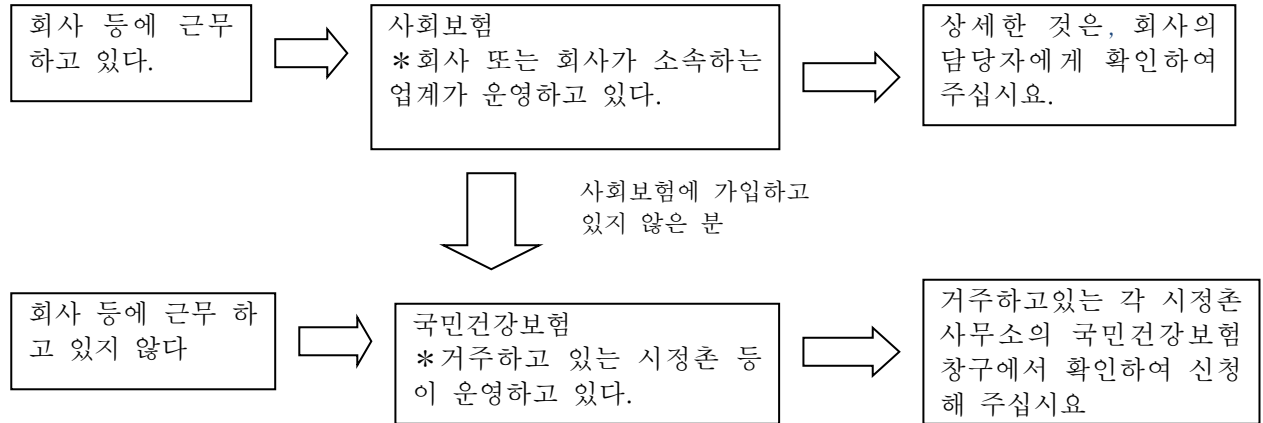


II-2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개호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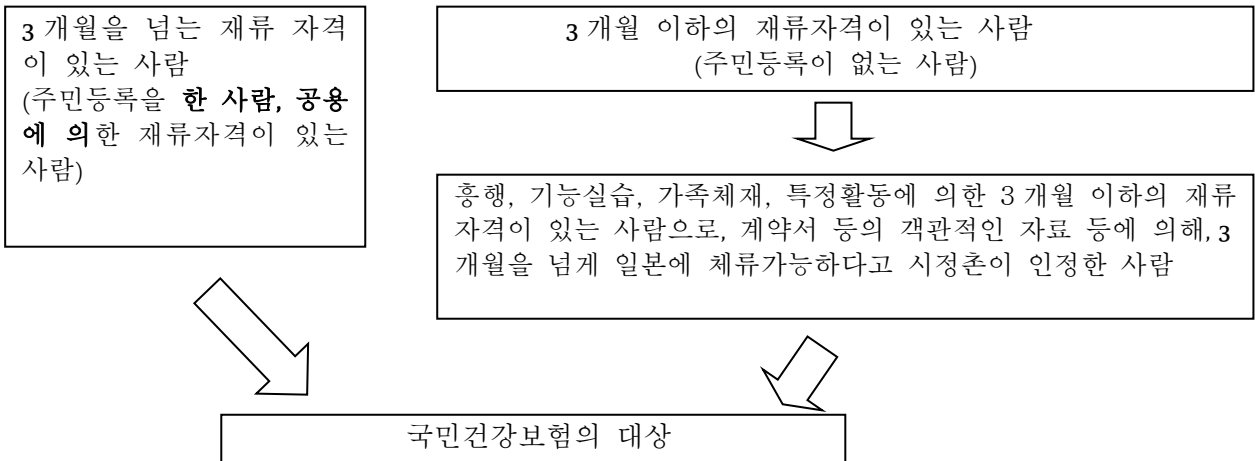
1. 일본의 의료보험

일본의 의료보험은, 크게 분류하여 이하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어느 한쪽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또, 일본의 의료비는 비싸기는 하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기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는 재류자격이 결정되어,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인 분은, 「후기고령자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3,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하기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오신 분 중에서 본 국정부로부터의 사회보장가입에 대한 증명서가 있는 분
- * 「특정활동」의 재류자격 중 의료목적으로 재류하는 분과 그 분을 보살피기 위해 재류하는 분
- * 「단기체재」, 「외교」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

(1) 가입절차

- 가입시기 입국시, 전입시, 자녀의 출생시, 사회보험 등을 중지했을 시
- 필요한 자료 재류카드(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일본체류가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입자의 보험급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급부금의 액수나 수속절차 등의 상세한 사항은 시정촌의 담당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IX-1)

- 의료비의 개인부담 가입자는 의료비의 3할 [의무교육 취학전까지는 2할, 70세 이상 74세 이하는 2할(생일이 1944년 4월 1일까지의 분은 나라의 특별조치에 의해 1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분은 3할)]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의 식사비는 별도 자기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또, 병실 차액 등은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비용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 고액요양비 한 사람이 한달 동안에 같은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의 자기부담액수가 일정액을 넘었을때, 그 추가 비용은 나중에 지급됩니다.
- 출산육아일시금 가입자가 출산했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가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 상제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장의를 하신 분에게 상제비용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 특정질환 특정질환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조성제도 등이 있습니다.

(3) 보험료 (세금)

보험료는 일률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구성, 전년도의 소득 등에 따라 계산되며, 시정촌에서 알려 줍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입할 시정촌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부록IX-1 62 페이지)

보험료는 한 해에 수차례로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보험료의 납부서가 우송되면 담당과의 창구,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창구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또, 세대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전원 65세 이상으로, 세대주의 연금이 매달 15,000엔 이상 있으면, 개호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본인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실업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 못 할 경우, 보험료의 감면 (싸게 되거나, 특별히 납부하지 않아도 됨) 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시정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교통사고나 타인에게서 부상을 당한 경우, 원래는 가해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하나, 신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해자에게 보험자 (시정촌)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합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

에 시정촌의 담당과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부록IX-1)

2018년 4월부터 오사카부가 시정촌과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하게 되어, 시정촌에 따라 다르던 보험료율과 보험료 감액기준 등에 대해서는, 오사카부내에서 통일되었습니다. 단, 6년간 경과조치기간을 두었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취급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정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3.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일본에서는 75세 이상되는 분은 이제까지의 의료보험에서 빠져 새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외국인도 3개월을 넘는 체류자격이 결정되어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본 체류가 3개월 이상으로 간주되는 분은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하는 시정촌의 후기고령자의료담당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2. 국민건강보험으로)

(1) 가입수속절차

- 가입수속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75세 생일 전달에 광역연합으로부터 보험증을 보내오게 됩니다.
- 65세 이상 74세 미만인 분들도 신청에 따라,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하는 시정촌의 후기고령자의료담당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입자의 보험급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의료비의 개인부담 의료비의 1할을 부담 (일정이상 소득이 있는 분은 3할) 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에 따르는 잡비 등은 보험대상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 고액요양비 한달동안의 의료비가 고액인 경우, 신청을 하면 자기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상제비 사망시에는 상제비가 지급됩니다.
- 조성제도 특정질환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의 조성 (비용이 싸게 되는 등) 이 있습니다.

상제비나 특정질환의 의료비조성의 수속절차는 거주하는 시정촌의 후기고령자의료담당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도도부현마다 각각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본인의 가족구성, 전년도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의 납부방법은 연금이 월액 15,000 엔 이상 있으며 개호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는 연금으로부터 공제됩니다. 그 밖의 다른 분들은 납부서가 우송되므로 담당과의 창구, 근교의 금융기관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본인께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실업을 하여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의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시정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부록IX-1)

4. 개호보험

일본에서는 나이로 인해 생긴 병 등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시정촌이 실시하는 개호보험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자

일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분 (제1호피보험자) 과 40세부터 64세 사이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 (제2호 피보험자) 이 개호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도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도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분

■ 「65세 이상인 분 (제1호 피보험자)」 이

-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인지증으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요개호상태) 임을 시구정촌에서 인정받은 분.
- 상시적인 개호의 필요는 없으나 몸차림 등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 (요지원상태) 임을 시구정촌에서 인정받은 분.

■ 「40세부터 64세까지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있는 분 (제2호피보험자)」 이면서 초로기의 인지증, 뇌혈관질환 등 가령이 원인인 16종류의 병으로 인해 요개호상태나 요지원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시구정촌에서 인정받은 분.

(3) 이용가능한 서비스

■ 재가서비스 (「요지원」 이신 분 대상의 개호예방서비스를 포함)

- 방문개호 (홈헬프서비스) 홈헬퍼가 방문하여 생활원조 및 신체간호를 한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영양상황의 확인과 지도, 진료의 보조 등을 진행한다.

- 통소간호 (데이서비스) 일일 데이서비스센터에서 입욕·식사, 기능훈련을 받는다.
- 단기입소생활개호 (쇼트스테이)
- 특정시설입거자생활개호 등

■ 시설서비스

-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재택생활이 곤란한 사람(원칙적으로 요개호 3이상인 분)이 일상생활상의 도움, 기능훈련, 간호개호 등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시설.
- 개호노인보건시설 기능훈련이나 간호,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재택복귀를 지향하는 시설.
- 개호요양형의료시설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개호나 기능훈련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설.
- 개호의료원 장기적 의료와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에게 일상적인 의료상의 관리와 일상생활을 돕는 시설.

※ 시설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요지원」 인 분은 이용못합니다.

■ 지역밀착형서비스 (「요지원」 사람용 개호예방서비스를 포함)

(4) 보험료의 납부방법

■ 65세 이상인 분 (제1호피보험자)

- 노령·퇴직연금 등이 매월 15,000 엔 이상인 분은 연금으로부터 공제, 기타 다른 분들은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등 직접 시정촌에 납부합니다.

■ 40세부터 64세까지의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 (제2호피보험자)

- 가입하신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포함하여 일괄해서 납부합니다.

(5) 이용료의 부담

- 간호보험으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1 할 또는 2 할 (소득에 따라 다름)을 부담 합니다. 또한 시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용 이외에 거주비·식비 등도 부담합니다.
- 매달의 부담이 너무 비싸지지 않도록 본인 부담액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액개호서비스비의 지급) 특히 소득이 낮은 분은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상한을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또 거주비·식비도 싸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6) 개호상담창구

개호보험과 관련한 수속, 이용가능한 서비스 등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각 시구정촌의 개호보험 상담창구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부록IX-1)